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3.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9%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공과금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부담기초액) 의무고용인원 미달에 따라 945,000원에서 최대 1,573,770원까지 적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30 만원	40 만원	50 만원	60 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장애인 직업영역개발 및 고용사례

? 발달장애인 '편의점 스태프'

- 2017년도 한 해 13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편의점에서 캐시 업무를 제외한 상품진열, 운반 검수, 매장 청결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대표 편의점에 취업했습니다.



?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

- 손과 손톱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고 정리할 뿐 아니라, 손톱에 그림이나 모양을 넣는 전문가입니다.
- 현재 많은 기업에서 기업 내 휴게실, 부대이용시설 등에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여성장애인 '상품정보 분석가'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판매조건 등 상품의 정보를 실시간 비교하여 취합·분석하는 사람으로 현재 대기업 쇼핑몰 등 e-커머스 산업에서 많은 여성장애인이 활동중입니다.



? 외국인 관광객 1,000만, 특급호텔에서 일하다 '호텔리어'

- 호텔예약에서 객실안내, 식음료 서비스, 룸서비스 등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 공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특급호텔을 타깃으로 선정, 지방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직무 개발과 고용 창출을 달성하였습니다.
- 서울시 소재 호텔 174개 중 49개의 특급호텔이 참여하여 장애인 채용을 확산시켰고, 부산시 특급호텔 협약체결로 100여명의 장애인 호텔리어가 취업하였습니다.



※ 더 많은 직업영역개발사례와 우수고용사례가 궁금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 > EDI Report > 연구자료 (<http://edi.kead.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의 지원 제도

! 취업지원서비스

- 장애인의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유형과 업무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드립니다.

! 근로지원인서비스

-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에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중증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통합고용지원서비스

- 기업의 장애인 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드립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장애인다수고용기업 중 매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지원

-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에 따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에게는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 대상 및 횟수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방법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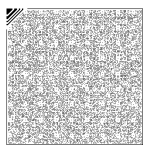
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 장애인 267만명 중 88.1%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2017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		에티켓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면접이나 회의를 준비할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는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구화, 필담 등).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할 때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서 한여름에도 긴 상의를 입거나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을 벗게 하는 행동은 삼갑니다.
내부 신체기능 장애		에티켓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경우 투석시간, 투석장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심장장애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간장애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수면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장애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건조한 환경이나 자극적인 가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작업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루·요루장애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배뇨·배변기능의 장애	탈의가 잦은 근무환경, 공개적으로 탈의를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전증장애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 장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에티켓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인지적인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폐성장애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장애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신장애		에티켓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도움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등급 1~7급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등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건물,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직무조정

-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재구성, 시간제 혹은 작업일정의 변경, 자리 재배치 등의 직무조정을 합니다.

■ 인적 지원

- 업무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및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작업지도원을 배치합니다.

■ 제도개선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면접이나 시험방식을 변경합니다.
- 과도한 부담이 없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장 방침을 변경, 조정해야 합니다.